

조현중

특허법 조문노트 추록

제5판



조현중 특허법 조문노트 (제5판) 추록

위치	수정 전	수정 후
p.2	<p>PART 01 특허법 [시행 2024. 8. 21.] [법률 제20322호, 2024. 2. 20., 일부개정]</p>	<p>PART 01 특허법 [시행 2025. 7. 22.] [법률 제20700호, 2025. 1. 21., 일부개정]</p>
	<p>제2조 3. “실시”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. 가. 물건의 발명인 경우 : 그 물건을 생산·사용·양도·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(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하는 행위 다.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: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·양도·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</p>	<p>제2조 3. “실시”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. 가. 물건의 발명인 경우 : 그 물건을 생산·사용·양도·대여·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(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하는 행위 다.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: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·양도·대여·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</p>
p.68	<p>제89조(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)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, 그 허가 또는 등록 등(이하 “허가등”이라 한다)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·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제 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<단서 신설></p>	<p>제89조(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)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, 그 허가 또는 등록 등(이하 “허가등”이라 한다)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·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제 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(제92조의5제2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 등록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날까지를 말한다)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.</p>
p.70	<p>제90조(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) ⑦ <신설></p>	<p>제90조(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) ⑦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등록출원인은 그 중 하나의 특허권에 대해서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하고,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에 대한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권의 존속기간도 연장할 수 없다. <신설 2025. 1. 21.></p>

	<p>⑧ <신설></p>	<p>⑧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출원은 제7항을 적용할 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. <신설 2025. 1. 21.></p>
p.70	<p>제91조(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)</p> <p>3. 연장신청의 기간이 제89조에 따라 인정되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<u>기간</u>을 초과하는 경우</p> <p>6. <신설></p>	<p>제91조(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) <개정 2025. 1. 21.></p> <p>3. 연장신청의 기간이 제89조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</p> <p>6. 제90조제7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에 대한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한 경우</p>
p.74	<p>제93조(준용규정)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, 제63조, 제67조, 제14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를 준용한다. <후단 신설></p>	<p>제93조(준용규정)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, 제63조, 제67조, 제78조제1항-제3항, 제14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제78조제1항 중 “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”은 “제92조의4 및 제92조의5에 따른 연장등록거절결정 또는 연장등록결정”으로, “그 심사절차”는 “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 심사 절차”로 본다. <개정 2025. 1. 21.></p>
p.94~96	<p>제127조(침해로 보는 행위)</p> <p>1.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: 그 물건의 <u>생산에</u> <u>만</u> 사용하는 물건을 <u>생산·양도·대여</u> 또는 <u>수입</u> 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<u>청약</u>을 하는 행위</p> <p>2.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: 그 방법의 <u>실시에</u> <u>만</u> 사용하는 물건을 <u>생산·양도·대여</u> 또는 <u>수입</u> 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<u>청약</u>을 하는 행위</p>	<p>제127조(침해로 보는 행위) <개정 2025. 1. 21.></p> <p>1.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: 그 물건의 <u>생산에</u> <u>만</u> 사용하는 물건을 <u>생산·양도·대여·수출</u> 또는 <u>수입</u> 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<u>청약</u>을 하는 행위</p> <p>2.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: 그 방법의 <u>실시에</u> <u>만</u> 사용하는 물건을 <u>생산·양도·대여·수출</u> 또는 <u>수입</u> 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<u>청약</u>을 하는 행위</p>
p.116	<p>제134조(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)</p> <p>3. 연장등록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.</p> <p>6. <신설></p>	<p>제134조(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)</p> <p>3. 연장등록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제89조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</p> <p>6. 제90조제7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등록된 경우</p>

	<p>④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연장등록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. 다만, 연장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연장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. <개정 2025. 1. 21.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연장등록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 경우 :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기간 2. 연장등록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 경우 : 제9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기간 <p>⑤ <신설></p>	<p>④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연장등록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. 다만, 연장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연장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. <개정 2025. 1. 21.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연장등록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 경우 : 제89조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기간 2. 연장등록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 경우 : 제9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기간 <p>⑤ 연장등록이 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인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. <개정 2025. 1. 21.></p>
p.144	<p>제181조(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)</p> <p>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권의 효력은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 또는 취득한 물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.</p> <p>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미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6. 2. 29., 2025. 1. 21.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.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·양도·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3.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·양도·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청약하는 행위 	<p>제181조(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)</p> <p>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권의 효력은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 또는 취득한 물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. <2025. 1. 21.></p> <p>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미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6. 2. 29., 2025. 1. 21.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.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·양도·대여·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3.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·양도·대여·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청약하는 행위

p.180	<p>〈신설〉</p>	<p>제229조의3(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유지 명령 위반죄) 제41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[본조신설 2025. 1. 21.]</p>
p.182	<p>제230조(양벌규정) 3. 제229조의3의 경우 : 1억원 이하의 벌금</p>	<p>제230조(양벌규정) <개정 2025. 1. 21.> 3. 제229조의3의 경우 : 1억원 이하의 벌금</p>

